511126882_0000062_02_04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한강로2가) KT용산사옥 3층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북부지원
전화 : 02)711-3621~2
팩스 : 02)711-5647

2015년 11월 13일 제작 [접수국 : 서울서초]

관리번호 : 133-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용답동)

서기철 귀하
133-783

검사대상 승강기 안내

건물명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만료안내대수	3

고객번호
1009-1601-0412-2

검사신청서 작성과 지로입금 후 접수되며, 수수료 납부에 대한 전자세금서 발행과 함께 검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 납부, 전자세금서 발행 등 문의사항 있는 경우 해당 지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지원	서울북부지원	전화번호	02)711-3621~2

안 내 사 항

◆승강기, 국민안전 프로젝트◆
1. 검사현장 해피콜 실시
2. 책임검사제 도입
3. 신속한 행정 처리

☎ 고객센터 1566 - 1277

수 수 료 납 부 안 내

1. 검사수수료(뒷면 수수료표 참조)는 지로 납부 및 고객전용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 현금카드(우리,신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부 후 5일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esafe.or.kr) 좌측 하단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국세청e-세로 연동)에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해 주신 고객(공급받는자)님의 e-mail 계정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부자용 바코드>

고객전용 입금계좌		
① 농 협	: 79012717568430	④ 신한은행 : 56209191825225
② 국민은행	: 67529011376056	⑤ 기업은행 : 08207103597682
③ 우리은행	: 26766745718665	⑥ 우 체 국 : 81081280515655

OCR 지로영수증(고객용)

지로번호	4	5	0	8	8	3	8

금액	393,360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고객번호	1009-1601-0412-2
고 객 명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수 납 인

금융결제원 승인
제 67276 호

지로통지서(금융기관용)

전자납부가능

OCR 지로번호 4508838 금액 393,360 원

지로번호 | 고 객 조 회 번 호 | C | 금 액 | C | Code

<4508838+ +000000100916010412 28+ +3933608< <11<

(한국전산홍 ☎ 2277-4611)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전자납부번호 1009-1601-0412-2

※ 이 장표는 모든 은행의 CD와 인터넷(www.giro.or.kr)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수 납 인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안내

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강기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 133-219)

상호(건물명)	도시철도공사본사사옥	고객번호	1009-1601-0412-2
승강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용답동)		

1. 검사수수료

유효기간 만 료 일	설치장소	종류 및 형식	층수 길이	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부가세
				구분	금액		
2016.01.04	1-1(우)	승객용 전기식	10	일반	117,300	0	11,730
2016.01.04	1-3	화물용 전기식	12	일반	123,000	0	12,300
2016.01.04	1-2(좌)	승객용 전기식	10	일반	117,300	0	11,730
			소계		357,600	0	35,760
			합계				393,360

2. 총 검사 비용

구분	검사수수료	번호판수수료	분동수수료	부가세
• 검사수수료	357,600	0	0	35,760
총합계				393,360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6호] 「승강기 검사기준」 15.19.항의 규정에 따라 '13년 9월15일이후 승강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 번호판이 미 부착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검사신청 전 관할지원(서울북부지원 :02)711-3621~2)으로 연락하시어 발급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안내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승강기검사기준」 주요 개정 내역 안내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여부 확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2.23)에 따라 종전 보수업 등록 업체는 '14.8.23까지 유지 관리업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시한(2014.8.25)까지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보수업 등록은 자연 실효(失效)됨

○ 승강기 안전장지 추가 설치 안내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 안전장치 추가 설치 소급 적용('15년 7월1일까지 기존 승강기 설치 의무화)**
  - 에스컬레이터 : 끼임 방지장치(스커트 디플렉터) 설치
  -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승객용 승강기 승강장문 :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 설치대상 : '08년9월10전 건축허가를 받은 승강기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건물의 층별 건물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되는 층에만 설치가능)

❑ 승강기 확인검사수수료 시행 안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45호, 2013.12.31 공포)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등)의 규정에 의해 검사 시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조건부합격으로 판정되어 확인검사수수료가 부과되오니,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께서는 검사 전 자체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시어 확인검사수수료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검사 수수료 : 검사결과 보완 또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아 추가로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체증요금 없음)

〈별표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확인검사 수수료(대당)
엘리베이터	전기식	승객용, 화물용	19,446
		비상용	19,688
		장애인용	19,507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9,382
		장애인용	19,437
	소형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20,150
덤웨이터			19,077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18,714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18,858

❑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미설치 현장 사후관리 강화 안내

문서번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227호(2015년1월20일시행)

- '15.3.15이후 승강기검사시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미설치시 불합격 처리**
- 불합격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운행정지 등 불이익 발생**
- 향후 불법운행승강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 검사기관에서는 미설치 승강기에 대한 설치 홍보 안내 협조 요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직인 생략